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27일

## 3. 제안사유

-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「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」가 제정·시행 중이지만,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·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장애인, 장애인 평생교육,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의 뜻 규정 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)
-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)
-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·운영, 위탁 관련 규정 (안 제7조, 제8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개정에 따라,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  
-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,
  - 정부에서도 ‘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(’ 20~ ’22)-관계부처 합동-’ 을 통해 시·도 및 교육청의 「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」 제정을 권고하고 있고,
  - 도 내 시민사회단체인 ‘충청북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’ 에서 도의회와의 간담회( ’21. 6. 1.)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음.
  
- 현재 「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」가 제정·시행 중이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, 사실상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설·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절대적 부족으로 효과적인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에서의 장애인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도 아직은 요원한 통합교육 정착의 전 단계로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인하고, 불모지나 다름없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, 도지사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·수행과 시·군 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.

- **안 제5조**는, 「평생교육법」 제11조에 따라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규정하고,
  -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 -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위해 장애인 가족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.
  - 실태조사 및 장애인평생교육 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은 시행계획이 지역 장애인들의 욕구(needs)를 반영해 실효성 있게 세워질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  
- **안 제6조**는,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 - 현재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, 유관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본 조항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평생교육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는 바,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및 점검이 요구됨.
  
- **안 제7조**는,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 -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「평생교육법」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와 더불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.
  - 또한 도지사가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뿐 아니라,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및 시·군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점점 많아지고,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.

※ 현재 도지사 설치, 지정 시설은 없고,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한 시설은 3곳(청주1, 충주1, 옥천1)이 있음.

- 안 제8조는, 안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#### 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
  - 또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,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